

#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192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일

제안자 : 박 선 미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 조례안 제4조제4항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 대상자나 참여자에게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이 중 기념품이라는 단어는 범위가 넓고 선심성 행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,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낮아 보다 공공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인 “자료”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여, 법령 표현의 중립성과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4항
  - “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” → “자료” 로 수정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자료 및 기념품”을 “자료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) ①·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독서문화 진흥사 업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 ③ <u>시장은 지역·직장·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의 독서 생활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 1. <u>독서문화 진흥 여 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</u> 2. <u>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 령별·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</u> 3. 「<u>영유아보육법</u>」 <u>에 따른 어린이집,</u> <u>「유아교육법」에 따</u> <u>른 유치원, 각급 학교,</u> <u>직장, 가정 및 지역 단</u> <u>위 등에 독서 환경을</u> <u>조성하기 위한 시책</u> <u>발굴 및 시행</u></p>	<p>제4조(독서문화 진흥사 업) ① ~ ② (개정안 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&lt;신 설&gt;</p>	<p>4. 장애인, 노인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</p> <p>5.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</p> <p>6. 독서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 동아리 육성·지원</p> <p>7. 독서경진대회, 백일장,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</p> <p>8.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자료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독서문화 진흥사업) (생략)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